임대차계약 해지 합의서

제1조(기존 임대차계약)

임대인 000와 임차인 000는 2022년 5월 1일 서울 000구 000동 000번지 000아파트 00동 00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기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22년 0월 0일부터 2024년 0월 0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제2조(중도 합의해지)

임대인과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위 계약기간 도중에 해지하기로 합의한다.

제3조(합의해지 효력 발생일)

본 합의해지의 효력은 2022년 11월 1일부터 발생한다.

제4조(합의해지 효과)

임대인은 2022년 11월 1일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000원을 반환하기로 하고, 이와 동시에 임차인은 부동산을 인도하면서 공과금과 본 합의해지 제6조에서 정한 비용 등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5조(손해배상 여부)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합의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면 제6조를 제외하고는 법정해제 등 어떠한 이유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제6조(비용 등 부담)

임차인은 아래의 중개수수료, 비용 등 일체를 부담하기로 하고, 2022년 11월 1일 총 000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1) 임대인이 추후 부담해야 할 중개수수료 000원

(2) 임대인이 기존에 부담하였던 도배 및 장판 비용 000원

2022년 0월 0일

임대인 : (인)

주 소 :

임차인 : (인)

주 소 :